# 야생생물 보호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야생생물 보호 ]**

이 콘텐츠에서는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법령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 1
1.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보상 등 ..... 4
1.1. 야생동물의 보호 ..... 4
1.1.1. 야생동물 학대금지 등 ..... 4
1.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 7
1.2.1.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 7
1.2.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 8
1.3. 야생동물의 질병관리 및 검역 ..... 10
1.3.1. 야생동물 질병관리 ..... 10
1.3.2. 야생동물 검역 ..... 12
2.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 ..... 16
2.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 16
2.1.1.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 16
2.1.2.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금지 ..... 16
2.2.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 ..... 20
2.2.1.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 20
2.2.2.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금지 ..... 22
2.2.3.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 25
2.2.4.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운영 및 관리 ..... 27
2.3.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구역 ..... 31
2.3.1.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 31
3. 야생생물(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보호 ..... 35
3.1. 야생생물의 보호 ..... 35
3.1.1.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금지 ..... 35
3.1.2. 야생생물 수출·수입 등 금지 ..... 37
3.1.3.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처리 ..... 39
4. 야생생물의 수렵과 밀렵 ..... 43
4.1. 야생생물의 수렵 ..... 43
4.1.1. 수렵장 및 수렵방법 ..... 43
4.1.2. 수렵면허 ..... 44
4.2.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신고 ..... 48
4.2.1. 밀렵·밀거래 신고 및 포상금 ..... 48

# 1.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보상 등

## 1.1. 야생동물의 보호

### 1.1.1. 야생동물 학대금지 등

#### 야생동물을 죽이거나 고통을 주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 야생동물의 학대금지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대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해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그 밖에 아래의 학대행위(「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대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도구·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않거나,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학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1호).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1호).

####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습니다.

##### 야생동물 전시금지

▪ 누구든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해서는 안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본문).

##### 예외적으로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단서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5)

- 전시하려는 야생동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4에 해당하는 종

√ 수산생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호)

√ 해양생물(「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사회공헌활동의 목적으로 대가 없이 야생동물을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5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연구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야생생물에서 인수공통질병 전파 가능성이 추가로 발견되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야생동물에 대한 일시적 전시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17호).

> Q. 2023년 12월 14일부터 동물관,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생물을 전시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로 인해 야생생물이 유기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나요?
>
> A.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자가 2023년 12월 14일 전까지 전시 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 등 현황을 명시하여 전시 시설 소재지가 속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2023년 12월 14일이후 4년 동안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088호, 2022. 12. 13.> 부칙 제3조제1항).
>
> 또한, 전시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해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유기·방치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2024년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건립 예정입니다.

##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 누구든지 불법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 포함)·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법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압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 포함)·양도·양수·운반 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호).

## 덫, 창애, 올무 등의 도구를 제작하거나 소지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 야생동물 포획도구 제작·판매 등 금지

▪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 예외적으로 야생동물 포획도구 제작·판매 등이 가능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포획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단서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학술 연구용 또는 관람·전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도구를 제작·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에 한정함)
-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도구를 제작·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으로 한정함)
-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쥐·두더지를 잡는 소형 덫·창애를 제작·판매 또는 소지·보관하는 경우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호).

##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는 먹이와 물을 공급하고, 충격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야생동물 운송 시 준수사항

▪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에 해당하는 살아 있는 야생동물[파충류·양서류 중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 활동으로 포획·채취된 수산물은 제외]을 운송하려는 자 중 자동차를 이용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운송하는 야생동물에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고, 운송 과정에서 충격과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할 것
-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차량이 운송 중에 야생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고 야생동물의 생태를 고려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등 운송 중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병든 야생동물, 어린 야생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포유 중인 새끼가 딸린 야생동물 등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동물을 운송하거나 번식기의 수컷 등 다른 동물을 공격할 수 있는 동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야생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야생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야생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운송 과정에서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것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운송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2호).

## 1.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 1.2.1.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비용 지원 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지역 또는 발생 우려 지역이나 다음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 및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함)은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4조제1항).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
- 야생동물로 인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로서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건물·시설 등의 부식 또는 파손

####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의 종류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

-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인정한 시설

▪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 예방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6조).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입가능성을 인정한 시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비용 신청

▪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비용 지원기준**

▪ 피해예방시설비용의 분담률은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30%, 해당 농업인 등 40%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 50, 지방자치단체50으로 합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 ※ 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2.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야생동물 때문에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대상**

▪ 야생동물에 따라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는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야생동물에 따른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임업·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제1항).

-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는 경우(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획조치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
-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야생동물에 따른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함)에 대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제2항).

-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피해보상 신청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호·제3호).

▸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 야생동물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해야 함)

√ 피해 명세서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해야 함)

√ 피해명세서

√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기준

▪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되,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제1항·제3항).

▪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하되,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습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제4항).

▪ 해당 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금은 피해보상 산정액에서 5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

### 피해보상금 지급 청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별지 제6호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제1항).

▪ 신청인은 위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해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관할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제2항 본문).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별지 제7호서식)
-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제3항).

### 1.3. 야생동물의 질병관리 및 검역

#### 1.3.1. 야생동물 질병관리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 포함)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제1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4).

▪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는 유선·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하고,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4).

-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발견장소 또는 보호장소
-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종류 및 마리 수
- 질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당시 상태)
-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한 경우만 해당)
- 신고자(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포함)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 야생동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을 추측할 수 있는 주변 정황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 포함)의 신고자에게 야생동물의 질병이 확진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

> ※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및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을 공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제1항).

> ※ 국내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질병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은 살처분 될 수 있습니다.

### 야생동물 질병 확산 방지 조치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0제1항).

- 야생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격리 또는 이동제한
- 관람객 등 외부인의 출입제한
- 야생동물의 살처분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위의 조치를 명하려면 대상 지역·질병 및 조치기간이 적힌 예방접종·격리·출입제한·살처분 명령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6서식)를 야생동물을 보호·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통지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8제2항).

### 조치 명령 대상 야생동물

▪ 위의 조치를 명해야 하는 야생동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로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8제1항 본문).

- 결핵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구제역,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아프리카돼지열병, 우폐역, 웨스트나일열
-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 예방과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질병

▪ 다만, 살처분 대상 야생동물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만 살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8제1항 단서).

### 야생동물의 살처분 및 사체의 소각·매몰

▪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야생동물을 전기, 이산화탄소가스 또는 약물(유해 독극물은 제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살처분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8제3항).

▪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4의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매몰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0제3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9).

▪ 야생동물을 소각하거나 매몰하려는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5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0제제4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0제1항).

▪ 소각하거나 매몰한 야생동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0제5항).

▪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3년 이내에 발굴해서는 안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1).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예방접종·격리·이동제한·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 또는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9호 및 제10호).

### 1.3.2. 야생동물 검역

**파충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유래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 이라 함)을 수입하려는 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입검역”이라 함)을 받아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8제1항 본문·제34조의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5 및 「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1.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에 한정)과 그 사체
2.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진단액류(診斷液類)(해당 진단액류에 병원체가 들어있는 경우로 한정)
3. 위 1.에 따른 야생동물 또는 그 사체에서 유래한 뼈·살·가죽·알·혈액(이하 "야생동물의 생산물"이라 함)
4. 지정검역물을 넣은 용기 또는 포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 “야생동물검역관”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수입 야생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은 제외)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두는 사람을 말하며, 수의사로서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과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3제1항 및 제2항 참조).

▪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9제1항).

- 야생동물 수입검역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9서식)
- 지정검역물의 운송에 관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 검역증명서(검역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 경우 제외)
- 수입허가 증명서(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 야생동물의 수입과 관련된 다음 서류의 사본(해당 야생동물을 수입한 경우만 해당)

  √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입·반입 허가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입·반입 허가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등 허가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야생생물 수입·반입 허가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반송되어 수입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인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검역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7 및 별표 8의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사람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사람도 검역신고를 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8제1항 단서).

입국하는 즉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0).

·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 수입신고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0서식)의 제출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호·제2호)의 제출

· 지정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대한 구두 신고

▪ 수입검역의 결과 지정검역물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익검역증명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1서식)를 발급받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0 본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2 본문).

※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이란 야생동물 질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야생동물 질병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따른 질병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질병을 말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검역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검역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12호).

## 지정검역물은 정해진 장소를 통해서 수입해야 합니다

### 수입장소의 제한

▪ 지정검역물은 국제항 중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9제1항 본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1제1항).

▪ 다만, 수입하려는 지정검역물을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지정받으려는 장소 및 지정 요청 사유 등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 수입장소를 따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9제1항 단서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1제2항).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13호).

## 지정검역물은 검역하는 중 또는 수입된 후에도 반송 또는 소각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불합격품 등의 처분

▪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하는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포장 및 그 밖에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등”이라 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화물주(대리인 포함)에게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3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7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
-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에 의해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 부패 또는 변질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 위의 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그 지정검역물 등을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을 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야생동물검역관이 직접 소각·매몰 등을 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3제2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5제2항 본문).

### 수입된 지정검역물 반송, 소각·매몰 등 처리

▪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주(대리인 포함)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각·매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6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5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인 경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 부패·변질되었거나 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지정검역물 등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 위의 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그 지정검역물 등을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을 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야생동물검역관이 직접 소각·매몰 등을 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6제2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7제2항 본문).

※ 소각 또는 매몰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 등에 대한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9호 및 제14호).

## 2.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

### 2.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 2.1.1.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말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을 말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종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예시)>

| 표범 | 늑대 | 황새 |
|---|---|---|
|  |  |  |

<출처: 국립생태원 – 멸종위기 야생생물, 참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종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예시)>

| 물개 | 매 | 큰바다사자 |
|---|---|---|
|  |  |  |

<출처: 국립생태원 – 멸종위기 야생생물, 참조>

#### 2.1.2.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금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면 안 됩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 포함)·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채취 등"이라 함)해서는 안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가 제외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 ·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
> ·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
> · 천연기념물(「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대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
> ·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 등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

-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1호).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자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위해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사하거나 이식한 자

## 학술 연구 등의 이유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허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인공증식한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 위 1.에 따라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아 수출·반출·가공·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해 증식한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

   √ 수입·반입한 원산지에서 증식한 것으로서 그 원산지에서 인공증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것
6.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허가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
-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위 1.의 경우만 해당)
- 전시에 관한 계획서(위 2.의 경우만 해당)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위 3. 또는 6.의 경우만 해당)
-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위 4.의 경우만 해당)
-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 6.의 경우만 해당)

▪ 허가신청이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허가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이 발급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증을 지녀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 위반 시 제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에 따른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호).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3호).

##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신고

▪ 허가를 받아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을 한 자는 포획·채취 등을 한 후 5일 이내에 허가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포획한 개체수·장소·시간 및 포획방법 등을 적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신고

▪ 야생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해질 당시에 그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그 정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본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보관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의 사진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결과 또는 보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수출·수입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허가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수입 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5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수입 등 허가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 인공증식증명서 사본

√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생물만 해당)

√ 수출품·반출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원산지에서 발행한 인공증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용계획서

√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이 허가되면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수입 등 허가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가 발급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호).

###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면 그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 취소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허가받은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2.2.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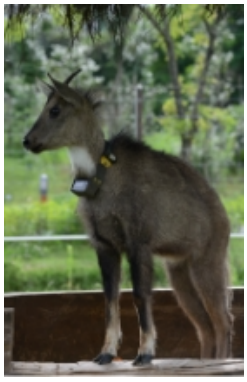
### 2.2.1.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중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생물을 말합니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함)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 따른 종을 말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1에서 정한 것

| <국제적 멸종위기종 부속서 1(예시)> | | |
|---|---|---|
| 회색앵무 | 산양 | 목화머리타마린 |
|  |  |  |
| <출처: 국립생태원 – 전시 – 주요동·식물, 참조> | | |

▹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 않지만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는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규제를 해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2에서 정한 것

| <국제적 멸종위기종 부속서 2(예시)> | | |
|---|---|---|
| 토카이게코 | 사막여우 | 열대갑옷도마뱀 |
|  |  |  |
| <출처: 국립생태원 – 전시 주요동·식물, 참조> | | |

▹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해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3에서 정한 것

<국제적 멸종위기종 부속서 3(예시)>

| 담비 | 솔방울도마뱀 |
| --- | --- |
|  |  |

<출처: 국립생태원 – 전시 – 주요동·식물, 참조>

### 2.2.2.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금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수입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허가기준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함)의 부속서(Ⅰ·Ⅱ·Ⅲ)에 포함되어 있는 종에 따른 거래의 규제에 적합할 것
- 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을 것
-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을 충족할 것

> ※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본문).

1.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등 허가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2.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①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함)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야생생물만 해당)

③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 세로 10.1㎝ 이상 크기의 사진(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 세로 4㎝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함)

④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⑤ 거래영향평가서(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에 따른 해상반출만 해당)

3. 외국에서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

① 수입 시 발급받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서

②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 세로 10.1㎝ 이상 크기의 사진(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 세로 4㎝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함)

③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④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

4.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①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사용계획서

③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

④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⑤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생물만 해당)을 적은 서류

⑥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Ⅲ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

⑦ 거래영향평가서(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

⑧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어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 등이 허가되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허가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가 발급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5호).

##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그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 사용 금지

▪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가공품은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본문).

####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용도변경 승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단서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1. 공공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박물관, 학술연구기관 등에 기증한 경우
2. 종의 증식·복원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해 방사 또는 번식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재수출을 하기 위해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생물을 학술 연구 또는 관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재수출하기 위해 수입 또는 반입하여 인공사육 중인 곰(수입 또는 반입한 것으로부터 증식한 개체를 포함)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처리기준에 적합한 경우
5. 수입 또는 반입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용도변경의 승인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용도변경 사유서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가공품에 대한 수출·수입등 허가서 사본
- 용도변경계획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사육곰 관리카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위 4.의 경우만 해당)

▪ 용도변경이 승인되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가 발급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4호).

###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양수하거나 폐사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 신고

▪ 허가를 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양수(사육·재배 장소의 이동을 포함)하려는 자는 양도·양수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본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신고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수입허가증 등 양도하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양도하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개체의 입수 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양도하려는 종이 수입 허가된 종에서 인공증식된 경우만 해당)

- 양수하려는 자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
- 사육시설 등록증 사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에서 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수하려는 자의 경우만 해당)
- 사용계획서, 양도·양수 계약서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가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업적 용도가 아닌 국제적 멸종위기종만 해당)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폐사 등 신고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반입을 허가받은 자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수한 자는 허가를 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본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질병 신고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수의사 진단서(질병으로 사육할 수 없게 된 경우만 해당하며, 개인이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앵무새의 경우는 제외)
- 사진, 영상 등 폐사·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수입허가증 등 죽거나 질병에 걸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 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 또는 질병·폐사 등을 신고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5호).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 등의 증명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4).

-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함)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거나 양도·양수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허가서 사본(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수입된 경우로 한정)
-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인공증식허가증 사본(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인공증식된 경우로 한정)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 세로 10.1㎝ 이상 크기의 사진(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 세로 4㎝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함)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5호의3).

## 2.2.3.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때에는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

▪ 그 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때에는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단서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4서식)
- 인공증식하려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 인공증식한 시설의 명세서
- 인공증식의 방법
-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 기준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그 인공증식을 허가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제2항).

-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이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을 것
- 인공증식에 따라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
-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근친교배 등으로 유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다만, 종 보존 차원의 번식을 위한 교배는 제외)
-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이 허가되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5서식)이 발급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제3항).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5호의2).

##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때에는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

▪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때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본문).

▪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 인공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 인공증식한 시설의 명세서

· 인공증식의 방법

·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

▪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위의 사항을 준수하여 그 발급을 신청하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가 발급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5호의2).

### 2.2.4.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운영 및 관리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면 적정한 시설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5제1항).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6서식)
- 사육시설의 사진 및 평면도
- 사육시설 면적 및 개체수 등을 포함한 사육시설 현황 내역서
- 일반 사육기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제1호)의 관리 계획을 포함한 사육시설 관리계획서
-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

>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설치기준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을 하려는 자가 위의 사항을 준수하여 그 발급을 신청하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7서식)이 발급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5제2항).

#### 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육시설 등록자가 될 수 없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등록 취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8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사육시설의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7호).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면적이나 소재지 등이 변경되면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이하 “사육시설등록자”라 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변경 등록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호의9서식)에 사육시설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6제1항).

- 사육시설의 면적(당초 면적의 10% 이상 축소하는 경우로 한정)
- 사육시설 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개체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제2호에 따른 1마리당 사육 면전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제외)
- 사육시설의 소재지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사육시설등록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변경 신고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호의9서식)에 사육시설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6제2항).

- 사육시설의 면적(당초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
- 사육시설 관리계획서에 포함된 관리 계획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사육시설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16호).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사육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5호의4).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정기 또는 수시 검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육시설의 현황, 사육시설 관리계획의 이행 및 사육동물의 적정관리 여부 등의 점검을 위해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8제1항).

- 서식지외보전기관
- 생물자원 보전시설
- 생물자원관(「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식물원, 동물원 및 수족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바목)
- 식물원, 동물원 및 수족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4호)
- 문화시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로 인정된 동물원, 식물원 및 수족관
- 동물원 및 수족관(「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 위의 시설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육시설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사육시설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8제2항).

- 정기검사 : 연 1회 이상
- 수시검사 : 개선명령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사육시설의 관리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5호의3).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등록자는 관리기준에 따라 동물을 사육해야 합니다.

#### 사육동물의 관리기준

▪ 사육시설등록자는 다음의 사육동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6).

- 사육시설이 사육동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장치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것
- 사육동물의 사육과정에서 건강상·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약품 등을 갖출 것
- 사육동물을 이송·운반하거나 사육하는 과정에서 탈출·폐사에 따른 안전사고나 생태계 교란 등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그 밖에 위의 기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육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을 폐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 사육시설 폐쇄 또는 운영 중지 신고

▪ 사육시설등록자는 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하려면 신고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사육시설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제1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10).

###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 사육시설등록자가 사망하거나 그 시설을 양도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양수인은 그에 따른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9제1항 본문).

▪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11서식)에 사육시설 등록증과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9제2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11).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사육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폐쇄 또는 운영 중지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5호의5·제5호의6).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이 등록된 후에도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쇄될 수 있습니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 취소

▪ 사육시설 등록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등록이 취소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8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시설을 등록한 경우
- 사육시설등록자 결격사유의 규정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 √ 피성년후견인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 취소 및 폐쇄 명령

▪ 사육시설등록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쇄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8제2항).

-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등록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 1년에 3회 이상 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육동물의 탈출, 폐사 또는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사육동물을 사육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2년 이상 사육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시설 폐쇄명령 기간 중 시설을 운영한 경우
- 사육동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2.3.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구역

### 2.3.1.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집단서식지 또는 번식지 등을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지역을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집단서식지·번식지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집단도래지로서 학술적 연구 및 보전 가치가 커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서식지·번식지의 훼손 또는 해당 종의 멸종 우려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누구든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해서 안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본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을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 및 토지의 형질변경
- 하천,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 토석의 채취
- 수면(水面)의 매립·간척
- 불을 놓는 행위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 위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은 그 행위의 중지를 명받거나 적절한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 훼손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6호).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중지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10호).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 훼손행위의 금지가 제외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8조)

- 군사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 화재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특별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금지행위, 출입 제한 행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금지행위

▪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버리는 행위
- 인화물질(「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 야생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 풀, 입목(立木)·죽(竹)의 채취 및 벌채(다만, 특별보호구역에서 그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풀, 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는 제외)
- 가축의 방목
-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 동물의 방사(放飼)(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하여 같은 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출입 제한

▪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출입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단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7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
- 실태조사
- 군사 목적을 위해 필요한 행위
- 천재지변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 √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 √ 화재가 발생한 경우
  - √ 그 밖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특별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 연구와 조사
- 자연환경조사(「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
-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 위반 시 제재

▪ 위의 금지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11호).

▪ 위의 출입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제3호).

### 각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준하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 시·도지사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신고

▪ 야생동물 번식기에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신고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에 출입 예정장소를 표시한 임야도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본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단서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 산불의 진화(鎭火)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복구 등을 위한 경우
-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 자연환경조사(「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를 하는 경우
-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 또는 영어(營漁)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구역에 들어간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13호).

## 3. 야생생물(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보호

### 3.1. 야생생물의 보호

#### 3.1.1.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금지

**허가 없이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또는 죽여서는 안 됩니다.**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야생생물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함)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안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에서 제외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
> ·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
> ·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
> · 천연기념물(「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대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
> ·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으로부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은 경우
>
> · 어업활동으로 불가피하게 혼획(混獲)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
> · 해양보호생물(「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대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6호).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해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사포하거나 주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7호).

## 학술 연구 등의 이유로 야생생물을 포획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허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야생생물 포획·채취 또는 고사(枯死)가 가능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단서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생물자원관(「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해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해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야생생물을 다음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는 경우

   √ 인공증식 또는 재배를 위해 적절한 장소와 시설을 확보하고 주변 환경을 관리할 것

   √ 그 밖에 인공증식 또는 재배의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또는 고사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야생생물 포획·채취 또는 고사 허가 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
-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보호·증식 및 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위 1.의 경우만 해당)
- 전시에 관한 계획서(위 2.의 경우만 해당)
- 생물의 이동계획서(위 3.의 경우만 해당)
-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위 4.의 경우만 해당)
- 인공증식계획서(위 4.의 경우만 해당)

▪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또는 고사가 허가되면 야생생물 포획·채취 또는 고사 허가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또는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각 발급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3항).

### 위반 시 제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채취 또는 죽이는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제7호).

## 야생생물을 허가를 받아 포획한 후에는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신고

▪ 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사람은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후 5일 이내에 야생동물 포획·채취 등 허가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에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개체수·장소·시간 및 포획·채취 또는 고사방법 등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인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6호).

### 허가조건 등을 위반하면 그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허가 취소

▪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또는 야생생물을 죽이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또는 죽일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받은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지 않은 경우

▪ 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7호).

## 3.1.2. 야생생물 수출·수입 등 금지

### 야생생물을 수출·수입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허가

▪ 야생생물 중 생물종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종(가공품 포함)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허가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수출이나 반출의 경우
  - √ 야생생물의 수출이나 반출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않을 것
  - √ 수출되거나 반출되는 야생생물이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획득 되었을 것
  - √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이동시킬 때에는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 또는 학대받거나 훼손될 위험을 취소화 할 것
- 수입이나 반입의 경우

√ 야생생물의 수입이나 반입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않을 것

√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수령하기로 예정된 자가 그 야생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야생동물 질병(「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가축전염병(「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의 매개 및 전파의 우려가 없을 것

√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금지에서 제외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 천연기념물(「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대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 야생생물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의약품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

▪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1.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2.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① 신용장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해당)

② 해당 야생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생물을 말함)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만 해당)

④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 세로 4㎝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함)

3.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①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② 사용계획서

③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만 해당)

④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

⑤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함) 부속서 III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⑥ 수출국에서 인공 사육·재배된 야생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 사육·재배된 야생생물만 해당)

⑦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 세로 4㎝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함)

▪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 허가되면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이 발급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생물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8호).

※ **야생동물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종으로서 살아있거나 알 상태인 야생동물을 양도·양수 또는 보관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해당 야생동물을 폐사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식용 등의 목적에 사용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양수·보관 또는 폐사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7호의2).

**허가조건 등을 위반하면 그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의 허가 취소

▪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허가를 취소될 수 있고, 아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야생생물과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3.1.3.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처리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말합니다.**

#### "유해야생동물"이란

▪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으로 정하는 종을 말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
|---|
| <유해야생동물(예시)> |
| 고라니 |
|  |
| <출처: 국립생태원 - 전시 – 주요동·식물, 참조> |

##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하려는 사람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으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과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가 발급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 포획도구, 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이 적정할 것
-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 억제 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할 것

### 위반 시 제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8호의2).

##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정해진 도구를 사용하거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시 준수사항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사람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포획도구로서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도구를 이용하여

포획할 것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즉시 부착하되,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허가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할 것

####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음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

▹ 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지물(地物), 산림·도로·논·밭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 포획허가를 받은 사람은 식별하기 쉬운 의복을 착용할 것

▹ 인가(人家)·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다만, 인가·축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음)

### 유해야생동물 포획한 후에는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

▪ 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은 포획한 후 5일 이내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포획일시·야생동물명·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4항).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제2호의2).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사람은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6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유해야생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4 및 별표 8의5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그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고,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제1항 단서).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사람이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방법으로 해당 유해야생동물을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제2항).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기준 등을 위반하면 그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아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유해야생동물 포획할 때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 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제2항).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9호).

## 4. 야생생물의 수렵과 밀렵

### 4.1. 야생생물의 수렵

#### 4.1.1. 수렵장 및 수렵방법

**수렵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수렵장에서만 수렵을 할 수 있습니다.**

**수렵장 설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해 설정 예정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 현황이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 지역에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이하 “수렵장”이라 함)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본문).

▹ 다만,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걸쳐 수렵장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설정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단서).

**수렵장 외 장소에서 수렵 금지**

▪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해서는 안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12호).

**수렵장에서는 별도로 지정된 야생동물만 수렵할 수 있습니다.**

**수렵동물의 지정**

▪ 수렵장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수렵동물의 종류 지정」 제2조).

▹ 포유류(3종);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 조류(13종): 꿩, 멧비둘기,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

**위반 시 제재**

▪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13호).

**수렵장에서도 정해진 장소 또는 시간에만 수렵을 할 수 있습니다.**

**수렵 제한**

▪ 수렵장에서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을 해서는 안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 시가지, 인가(人家)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집회 장소 또는 광장

▹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m 이내의 장소 포함)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이 있는 장소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 이내의 장소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 이내의 장소
-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해안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600m 이내의 장소 포함)
- 수렵장설정자가 야생동물 보호 또는 인명·재산·가축·철도차량 및 항공기 등에 대한 피해 발생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5호).

### 4.1.2. 수렵면허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면 수렵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수렵면허

▪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①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② 수렵 강습을 이수한 후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수렵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제2항).

- 제1종 수렵면허: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제2종 수렵면허: 총기 외의 수렵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 ※ "수렵동물"이란 다음의 동물을 말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수렵동물의 종류 지정」 제2조).
>
> · 포유류(3종);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
> · 조류(13종): 꿩, 멧비둘기,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

▪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 수렵면허 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인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 받은 것만 해당)
-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음)
  - √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다만,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음)
  - √ 총기 소지의 적정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제1종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 증명사진 1장

#### 수렵면허 갱신

▪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 수렵면허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 미성년자
- 심신상실자
-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 마약류중독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받지 않고 수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14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3호).

### 수렵면허를 받으려면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수렵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합니다.

#### 수렵면허시험

▪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수렵면허의 종류별로 수렵에 관한 다음의 내용 사항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수렵면허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 ※ 수렵면허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렵 강습

▪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수렵강습기관에서 다음의 과목에 대한 강습을 받아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제2항 및 별표 10).

| 강습과목 | 강습시간 |
|---|---|
| 수렵의 역사·문화 | 1시간 |
|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 1시간 |
|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1시간 |
| 수렵도구의 사용법, 안전수칙 및 사고발생 시 조치방법 | 1시간<br>(실기 강습은 제외) |

▪ 수렵 강습을 받은 사람은 강습이수증을 발급받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강습이수증을 발급받으면 수렵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 수렵면허증 발급

▪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강습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수렵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 수렵면허의 효력은 수렵면허증을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발급할 때부터 발생하고, 발급받은 수렵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 수렵면허증 휴대 의무

▪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대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4호).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않고 수렵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22호).

##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렵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수렵면허의 취소 및 정지

▪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렵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수렵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고, 아래의 1.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렵면허가 취소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2.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수렵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4. 수렵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5.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6.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7.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8.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9. 수렵승인을 받지 않고 수렵을 한 경우
1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수렵을 한 경우

▪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렵면허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20호).

## 수렵장에서 수렵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렵승인

▪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장을 설정한 자(이하 “수렵장설정자”라 함)에게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 수렵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수렵장설정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 수렵면허증 사본

▪ 수립승인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조건을 붙여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와 수렵동물 확인표지가 발급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제2항).

- 수렵동물을 포획한 후 지체 없이 발급받은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포획한 동물에게 붙일 것
- 승인 받은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동물, 포획 예정량 등을 지킬 것
-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에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적을 것
-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날 할 것

▪ 수렵승인을 받아 수렵한 사람은 수렵한 동물에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않고 수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15호).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이지 않은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21호).

### 수렵장에서 수렵을 하려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수렵보험

▪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3천만원 이상
-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하여 그 사람이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 4.2.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신고

### 4.2.1. 밀렵·밀거래 신고 및 포상금

### 야생생물 밀렵·밀거래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밀렵·밀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불법 포획도구를 수거한 자 및 질병에 걸릴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 포함)을 신고한 자에게 각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 밀렵·밀거래 신고방법

▪ 밀렵·밀거래 신고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국민소통-밀렵·밀거래신고 참조).

| 구분 | 신고방법 |
|---|---|
| 홈페이지 |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밀렵·밀거래 신고<br>지방환경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밀렵·밀거래 신고 |
| 환경신문고<br>(특수전화 128) | 동일지역 통화권내(시내)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8 (시·군·구 접속)<br>동일지역 통화권외(시외) 신고 → 지역번호 + 128 (시·도 접속)<br>휴대전화를 이용한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8 (해당지역 시·도 접속) |
| 그 밖의 방법 |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등 |

### 포상금 지급 기준

▪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연간 포상금은 1,000만원(불법연구의 경우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국민소통-밀렵·밀거래신고 참조).

| 신고대상 | 구분 | | 포상금 지급액 |
|---|---|---|---|
| 불법적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행위를 알선한 자 | 포유류 | | 200만 |
| | 조류 | | 100만 |
| | 기타 | | 50만 |
|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자 | | | 50만 |
|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등을 한 자 | 동물 | 포유류 | 500만 |
| | | 조류 | 300만 |
| | | 기타 | 100만 |
| | 식물 | 멸종 Ⅰ급 | 30만 |
| | | 멸종 Ⅱ급 | 10만 |
| (멸종위기)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 시키기 위해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 | | 100만 |

| | | | |
|---|---|---|---|
|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 부속서 I | 포유류 | 100만 |
| | | 조류 | 70만 |
| | | 기타 | 50만 |
| | 부속서 II | 포유류 | 50만 |
| | | 조류 | 30만 |
| | | 기타 | 10만 |
| | 부속서III | 포유류 | 7만 |
| | | 조류 | 5만 |
| | | 기타 | 3만 |
|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 | 포유류 | | 200만 |
| | 조류 | | 100만 |
| | 기타 | | 50만 |
| 야생동물 및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 포유류 | | 30만 |
| | 조류 | | 20만 |
| | 기타 | | 10만 |
|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한 자 | | | 30만 |
|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 | | 100만 |
| 지정·고시된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한 사람 | | | |
| 지정·고시된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하거나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람 | | | |
|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않고 수렵한 사람 | | | |
| 수렵 제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람 | | | 50만 |
|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 다니는 사람 | | |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국민소통-밀렵·밀거래신고 참조>

▪ 동일한 밀렵·밀거래 사항은 최초 신고한 개인 또는 단체에 지급하고, 불법연구에 대해서는 최초로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한 경우 지급합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국민소통-밀렵·밀거래신고 참조).

### 포상금 지급 방법

▪ 포상금은 법원의 판결내용을 조회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2월 이내(불법엽구를 수거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되, 신고내용 및 법령위반사항이 명확한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에 지급 가능합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국민소통-밀렵·밀거래신고 참조).

▪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 입금 이외에, 지역 여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등의 현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국민소통-밀렵·밀거래신고 참조).